

이스트 나일스 커뮤니티 서비스  
미납으로 인한 수도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한  
지역구의 방침

2020년 2월 1일 발효

이스트 나일스 커뮤니티 서비스 지역구의(“지역구”) 다른 정책, 규칙, 혹은 조례안에도 불구하고, 미납으로 인한 수도서비스의 중단에 대한 이 방침은(“방침”)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수도서비스의 중단에 해당된다. 이 방침과 다른 방침, 규칙, 혹은 조례안의 충돌이 있으면, 이 방침이 우세하다.

**체납:**

지역구가 공급한 주거용 수도요금을 청구받으면 납부해야하고, 고지서가 발송되고 이십(20)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다. 체납된 후, \$5.00 연체료는 미납요금에 부과될 것이다. 통상적으로, 미납잔액과 연체료 징수에 대한 이 통지서는 다음 달의 서비스 고지서에 나오게 된다. 다음 청구주기 전에 납부약정을 맺은 고객들은 약정약관에 따라 후속으로 납부한 금액에 체납료가 부과되지 않게 된다.

**서비스의 중단:**

고객의 납부금이 최소한 육십(60)일 동안 체납이 될 때까지 지역구는 미납으로 주거용 수도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지역구가 수도서비스를 중단하기 전에, 다음 통지서를 제공하거나 시도할 것이다.

1. 발송한 중단 통지서 (단수일로부터 15일 전/체납 후 45일까지):

체납되고 사십오(45)일 내에 납부금을 받지 못했으면, 서비스가 공급된 주소로 고객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고객의 청구주소가 서비스 주소와 다른 경우, 통지서는 주거용 서비스를 공급받는 건물의 주소와 청구주소로 보내고, “입주자” 앞으로 보내게 된다. 통지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전부 포함하나 국한되지 않는다.

- a. 고객의 이름과 주소.
- b. 체납 금액
- c. 주거용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한 요금납부일이나 납부약정 체결일
- d. 체납료를 납부하기 위한 연장을 신청하는 절차 설명
- e. 고지서를 분쟁하거나 항소하는 절차 설명
- f. 고객이 주거용 서비스의 체납료에 대한 할부상환약정을 포함한 납부연기, 납부인하, 별도납부약정을 요청하는 절차의 설명

g. 지역구의 수금 방침에 대한 지역구의 전화번호와 웹사이트 링크

2. 48 시간 단수통지서 (전화번호와/혹은 문고리로 된 이 방침의 사본):

중단 통지서에 추가적으로 지역구는 서비스 종료를 하기 최소한 사십팔(48)시간 전에 수도서비스의 임박한 종료를 알리는 48시간 단수통지서를 제공할 것이다. 이 48시간 단수통지서는 문고리로 두고/혹은 기록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하게 되고, 특정일까지 납부금을 받지 않는 경우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할 것이다.

지역구가 주거지에 사는 고객이나 성인에게 전화로 연락이 안되는 경우, 지역구는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서비스의 임박한 중단통지서와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서비스의 중단에 관한 지역구의 방침을 주거지에 찾아가서 두고 오거나,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 두는 방법을 마련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

모든 체납된 수도요금과 관련 비용은 48시간 단수통지서에 나온 날짜의 오후2시까지 지역구에서 받아야 한다. 48시간 단수통지서에 나온 시간 내에 납부금을 받지 못하면,재연결 수수료 등의 만기된 비용과 요금을 전액 납부하거나 이 방침에 의거하여 별도납부약정을 맺을 때까지 수도서비스는 중단되고 다시 켜지 않게 된다.

**별도납부약정 :**

정상납부기간에 수도서비스를 납부할 형편이 안되는 고객은 연체료나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해 별도납부약정을 문서로 요청해도 된다. 지역구는 요청에 관련된 모든 상황을 참작하게 되고 납부약정이 정당한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분쟁된 고지서나 항소:**

고지서를 분쟁하거나 항소하기 위해, 고객은 문서로 정식 소장을 제기해야 하고 항소를 뒷받침하는 모든 사실을 분명히 진술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지역구에 항소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East Niles Community Services  
District 1417 Vale Street  
Bakersfield, CA 93306  
(661) 871-2011

근무시간 월요일-금요일 월요일 오전8:30 - 저녁5:00 (공휴일 제외)

### 지역구가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게 되는 상황: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만일 다음 조건에 전부 부합하면, 지역구는 미납으로 주거용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1. 주거용 서비스의 중단이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게 되면 고객이나 고객의 세입자가 주치의로부터 인증서를 받아 지역구에 제출한다.<sup>1</sup>
2. 고객은 지역구의 정상적인 청구주기에서 주거용서비스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고객의 가족원이 캘웍스, 캘프레시, 일반 보조금, 메디칼, 보조보장소득/ 주정부 추가보조금 프로그램, 혹은 여성, 신생아, 아동을 위한 캘리포니아 특수 영양보조 프로그램의 현재 수혜자이거나 혹은 고객이 연간 가구소득이 연방정부 빈곤 수치의 200% 이하라고 신고한 경우, 고객은 경제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진다.
3. 이 방침에 일치하여 고객은 분할납부약정, 별도납부일정, 기한연기나 인하납부약정을 체결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세가지 조건에 전부 부합되면, 고객은 체납요금을 십이(12)개월 기간동안 할부상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상기 서술된 세가지 조건에 준수한다는 주장의 증명서류를 받은 후, 지역구 부장은 증명서류를 재고하고, 추가 정보를 요청, 혹은 요청의 승낙이나 거부 중 한가지를 제출하고 칠(7)영업일 내에 준수 판정을 내린다.

이 방침의 예외조항을 부장이나 부장의 대리인은 가치있고 온당하다고 간주하면 개별적으로 승인할 수도 있다.

---

<sup>1</sup> “주 간병제공인”은 복지제도법14088(b)(1)항 (b)관 (1)문단 하부문단(A)에서 (A) 인턴, 일반의, 산부인과 의사, 소아과 의사, 가정의, 의사가 아닌 개업의, 혹은 1차 진료소, 지방진료소, 메디칼 수혜자에게 사례관리를 제공할 것에 동의한 현재 메디칼 프로그램에 가입된 지역사회 진료소나 병원 외래환자 진료소 혹은 (B) 하부문단(A)에 나온 주치의를 채용하고, 운영하고, 계약을 맺었고, 이 조항에 따라 계약상 목적으로 그러한 주치의를 이용할 것에 동의한 카운티나 정치적 하부기관으로 정의되어 있다.



## 수돗물 도난:

형법 498, 624, 625항을 포함하나 국한되지 않는 캘리포니아 법으로 수돗물 도난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정의한다. 의심스러운 수돗물 도난을 발견하면, 지역구 직원은 사법집행관에게 연락할 것이다. 수돗물 도난으로 지역구가 혐의를 기소할 수 있다.

## 집주인-세입자 상황 :

지역구가 분리된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모빌홈 파크, 노동캠프의 영구 주거용 구조물의 주거용 입주자에게 개별적으로 계량기가 설치된 주거용 서비스를 공급하고, 주거지, 구조, 공원의 건물주, 관리인, 운영자가 기록상 고객이면, 계정이 체납된 경우, 지역구는 종료하기 최소한 10일 전에 서비스가 종료되는 사실을 주거용 고객에게 문서로 알리는 성실한 노력을 해야한다. 세입자가 임대계약서나 월세를 납부한 증거의 형태로 임대 확인을 제공하는 한, 통지서에서 주거용 입주자들이 체납계정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고객이 될 권리가 있고, 그러면 서비스를 청구받게 되는 사실도 알려준다.

매스터 계량기가 있는 다세대 건물이면, 주거용 입주자가 서비스 약정에 동의하고 법의 요건과 지역구의 규칙과 법규를 충족하지 않는 한, 지역구는 주거용 입주자가 서비스를 사용하게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주거용 입주자 중 한 명이나 한 명 이상이 지역구가 만족할 만큼 계정의 추후 요금에 대한 책임을 인수할 용의가 있고 인수할 능력이 있는 경우, 혹은 지역구 규칙과 법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거용 입주자에게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중단할 물리적인 방법이 합법적으로 있는 경우, 지역구는 요건을 충족한 주거용 입주자에게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서비스를 받기 전에, 계량된 연결시설에 대한 세입자 신청인은 지역구 방침에 따라 수도요금 납부를 보증하기 위한 현찰 보증금을 납부하게 된다.

분리된 단독주택의 경우, 지역구는 고객이 되는 입주자가 기록상 체납계정 고객이 현재나 과거에 주거지의 집주인, 관리인, 에이전트였다고 증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증명은 임대차계약서, 월세영수증, 입주자가 건물을 임대한다고 나온 정부문서, 혹은 민사법 1962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를 포함하나 국한되지 않는다.

## 중단 신고:

지역구는 납부 불능으로 인하여 주거용 서비스가 중단된 연간 총 횟수를 이사회에 보고하게 되고 지역구의 웹사이트에 게시하게 된다.

## 고객의 질문이나 불만사항:

이 방침에 대한 질문은 지역구에 문의하십시오.

East Niles Community Services District  
1417 Vale Street  
Bakersfield, CA 93306  
(661) 871-2011

근무시간 월요일- 금요일 월요일 아침 8:30 - 저녁5:00 (공휴일 제외)

고객계정상담원이 고객의 고지서에 대한 불만사항을 해결하지 못하면, 고객은 부장에게 불만신고를 할 수 있다. 부장이 고객의 불만사항을 해결하지 못하면, 고객은 불만신고를 문서로 제출하여 이사회에 불만신고를 할 수 있다. 이사회 결정은 최종적이다.